

사 례 45

대학교수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다루면서, 이 사건과 무관한 해당 대학의 재학생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대전조정22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13. 04. 1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모 대학 교수의 제자 성추행 관련 보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인터뷰 방송 화면에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인의 실명을 피해자의 가명으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신청인의 이름이 비록 방송에서 성추행 피해자의 가명으로 기재되기는 했으나, 신청인은 동 대학 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주변인들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오해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피신청인이 J교수라고 가해자를 기재한 것을 보면 피해자도 이니셜 표기로 대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게 이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 이름으로 가명 처리를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1차 심리 때 피신청인의 유감표명이 있었으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며 조정신청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MBC-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자 성추행, 교수사회 이대로 좋은가』 제하의 보도 (2013년 4월 12일자 23:15)
- **내 용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대체적으로 실기수업이다 보니까, 뒤에 서 있어서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비켜봐라, 하면서 살짝 끌어안는 느낌을 준다던가...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술을 먹으러 가면 강압적으로 나오시고, 1, 2학년 과대표들은 더 (집에) 못 가게 해서 노래방에 가서 브루스까지 썼고...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친구들한테 들었던 말들이었어요. 선배들 말이 맞았다. 우리끼리만 있으니깐 더 그러더라, 만지더라, 자꾸 접촉을 해온다...
- ▷ ○○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 졸업생 반응은 놀랍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실. 꺾을 대로 꺾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 ▷ C교수(○○대학교) : 지금까지 상황들이 너무 사실과 다르고, 너무 왜곡됐고, 과장됐고. 부끄러운 행동한 적이 없어요.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노래방에서 교수가 몸을 더듬는 것 같아서 도망을 다녔는데도 저를 계속 쫓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끔 자기 몸으로 저를 가린 다음에 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도 만졌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남자 학우들의 주요 신체부위를 만졌습니다.
- ▷ J교수(△△대학교) : 저는 완전히 필름이 끊겨가지고 만취한 상태였고, 저는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여학생을 몰래 으스스한 곳으로 불러내서 추행했다고 하는 이런 것과 다르지 않냐... 한 번 취해가지고 실수한 건데...
- ▷ 김○○(가명/성추행 피해자) : 작년 9월 이 교수가 부임한 이후에 9월 말 경에 저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수위의 추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당시 교수가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각서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스스로 교수직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 가해 교수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학생들을 불러서 저를 찾아내려고 계속 시도를 했고, 법조계가 좁다, 그런 태도로는 법조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 저는 신입생이었고 앞으로 입학할 해서 이분을 빼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저에게 왜 이러시냐고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 이○○(가명/성추행 피해자) : 저희 생계를 진 분이잖아요 그분들이 학점이든 나중에 추후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생활이든.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 ▷ △△대학교 학생처 관계자 : 신문에 난대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저희 손에서는 떠났어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신청 후 경과

조정신청 취하

사 례 46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으나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그대로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3강원조정12·13, 2013강원조정14·15(병합)

각 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외 3인

피신청인 :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

중 재 부 : 강원중재부

접 수 일 : 2013. 06. 26.

사 건 개 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했지만 경찰의 부실수사로 무혐의 송치됐다고 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이 적시된 플랜카드 사진을 그대로 기사에 게재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기사 작성 전 신청인들에게 인터뷰 요청도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보도하면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기사에 그대로 노출시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및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를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인터넷 강원도민일보의 조정대상기사 및 신청인들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12면)
- 내 용 : 사법정의 국민연대 시위 평창경찰서 “재조사 하겠다”



▲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평창/신현태

사법정의 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 회원 10여명은 11일 평창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갖고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사법연대에 따르면 홍씨 등 4명은 최 모(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매수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는 등의 공갈로 시가 4억여 원짜리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사도록 해 금품을 강탈하고 이를 고소해 조사를 벌인 평창경찰서의 경찰관은 부실수사로 홍씨를 무혐의 송치했다는 것. 이에 따라 사법연대는 홍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과 담당 경찰관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평창경찰서 관계자는 “고소내용에 대한 충실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다시 한 번 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대상보도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 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3년 6월 12일자)
- 내 용 : <조정대상보도 1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강원도민일보 (12면-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1)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사법정의 국민연대시위’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1)〉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 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입을 위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속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의 홈페이지 지역-평창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반론보도문 (2)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반론보도문 (2)가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반론보도문 (2)를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2)〉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이 지난 2013년 6월 12일「“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홍 모 씨 등 4명은 최 모 (48.여.평창군 ○○면)씨에게 펜션을 강매하는 등 공갈협박 및 금품을 강탈한 사실이 없으며, 최 모 씨가 자신의 기도터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매매를 원하여 김 모 씨와 박 모 씨 부부는 평소 10억에 매매 하려던 펜션을 8억 3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속인 홍 모 씨는 이 거래에 어떠한 관련이 없으며, 홍 모 씨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최 모 씨가 펜션을 구매하는데 있어 어떠한 주장을 한 것이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펜션을 구매한 최 모 씨가 7개월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사실도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어떠한 유착관계가 전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 목 : 반론보도문

나. 본 문 : 본지는 지난 6월 12일자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정의 국민연대 회원 10여명은 부동산 사기로 거액을 강탈한 홍 모 씨 등 4명을 구속의견으로 송치하고 이들을 돌봐준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홍△△, 김○○, 박○○은 “경찰조사결과 최 모 씨가 증거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였기에 무혐의 송치가 된 것이다”라고 전해왔으며, 평창경찰서 담당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3. 7. 5.자 <강원도민일보> 12면에 보도하되, 제목 활자는 2013. 6. 12.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인 『“부동산 사기 부실수사…경찰 징계해야”』 활자와 동일한 크기와 글씨체로 2단 이상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2013. 7. 5. 09:00부터 7. 7. 09:00까지 2일간 <강원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do.net/>) 지역-평창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제목 및 본문활자는 인터넷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한다. 또한 초기화면 보도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인터넷 조정대상기사(<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30179>) 및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향후 제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요청을 하도록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강원도민일보는 신청인들에게 2013년 7월 31일까지 각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을 피신청인이 이행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3. 07.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1

-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12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2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3년 7월 5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3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 각 1,000,000원 지급